

289

예 23 구

기안자	인사	전화번호	341	공보	필	요	불	필	요
보입담당	인사	과장	내무	국장	제 1	부	시	장	시
임조자	법정	시정	과장	보	준				
서명		회계	과장	재무	국장				
기년월	일	1964. 8. 11.	시년월	일	1964. 8. 2.	동			정
분류기호	서	내인			(2.4085)	관			장
경수	유	수신처	참	조		발	신		서울특별시
제	목	회계직 공무원의 입면사무 취임							

회시성나
인
결
국

1. 행정사무 간소화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입면사무를 취임하오니 사무에 협조하기 바랍니다.

2. 취임규정

가. 타부처 소관의 회계직 공무원의 입면 및 입면지청에 관한 사무를 소속 국장에게 취임한다.

나.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일체의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입면권을 소속 국장에게 취임한다.

다. 전 "가" "나" 항의 취임된 사람을 행할 때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득하여야 한다.

라. 회계직 공무원들 입면하였을 때는 별지 (1) 와 같은

23

64-22
94

90

405

서울특별시
49

442

발령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.

별지 1

소	속	직	급	성	명	발령사	함	발령일자	비	고
---	---	---	---	---	---	-----	---	------	---	---

(안 2)

수신 수신처 참조

발신 서울특별시

제 목 동건

1. 다음과 같이 퇴직공무원의 입면에 대한 커일규정이
제정되었기 통지함.

2. 위임규정 (원안이기 시행할것) "끝"

수신처 :

서실 4, 5 서과 1-34

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

제 3조 2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
에 있어서는 따로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, 청,소에 있어서는 청,
소의 장이 이를 임명할수 있다.
다만. 동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임명한다.